

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10. 15. 조 턱 회 의원 외 3인
나. 회부일자 : 2010. 10. 15.
다. 상정일자 : 2010. 10. 25.(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조 턱 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제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합으로써
- 시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정신적, 육체적,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(안 제2조)
- 건강도시 기본원칙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사업내용을 규정함 (안 제4조)
-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범위등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)
- 건강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(안 제6조 내지 안 제12조)
- 건강도시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둠 (안 제14조)

3. 견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홍완식)

- 본 조례안은 우리시를 건강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증진 사업추진 및 시민 각계각층의 참여가 필요한 바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추진의 기본원칙과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범위 및 주요 추진사업 등을 명시하였고,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-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건강 증진책무와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전국의 5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-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건강문제는 각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지만,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전강, 환경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바,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건강한 공공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의 소관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중 집행기관 관계부서(보건소)에서 의견 제출이 있어, 본 조례안의 성격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조사와 업무 총괄조정부서 및 의견제출 부서와 협의한 결과 보건소에서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기타 법적, 행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답변자 : 조덕희 의원, 건강증진과장)

“없음”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부. 끝.